

③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중 “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”를 “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”로 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폐지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72
------	----

2002. 12.
재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 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2년 11월 4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 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6일 회부
 - 다. 상정일자 : 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(2002년 12월 26일) 상정, 의결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원 세 훈)
 - 가. 폐지이유
 - 우리시가 설치한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근거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·운영하였으나, 여러 유형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,
 - 이 조례의 내용을 담은 각 시설유형별 개별조례의 제정을 추진하여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관련 조례의 제정이 완료되었기에 존치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내용임.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 남 중)
 - 본 조례는 1998년 4월 30일 그동안 각 시설별로 규정된 4개 조례 「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조례」, 「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」, 「중소기업과농수산업육성·지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조례」, 「직업전문학교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조례」와 「서울놀이마당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조례」를 통·폐합하여 제정하였으나,
 - 통합조례인 본 조례가 각 시설별 특성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, 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시 본 조례를 폐지하고 각 개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13명, 출석위원 11명, 전원일치)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